

2023학년도 2학기 임시 자연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회의록

일시 2023. 10. 30. (월) 19:00

장소 학생회관 소강당

□ 정족수 확인

1. 인사 및 유의 사항 안내
2. 출결 확인: 재적의원 91명, 출석의원 54명

□ 개회 선언

-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장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3년 2학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9시 16분 개회

□ 의장 및 서기단 소개

1. 의장: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기계공학부 19학번 박근아
2. 서기단: 인사운영국장 화학공학/고분자공학부 19학번 김채운

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

- 의사진행, 안건 상정 등 본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회의 진행

□ 논의 · 인준안건 검토 및 인준

- ※ 총학생회칙 제27조(의결)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1.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심의 및 의결
 -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변경 내용

개정 전	개정 후
제42조 (대의원의 의무)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,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.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,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③ 대의원이 연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단,	제42조 (대의원의 의무)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,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.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,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③ 대의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,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.

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으며, 중앙운영위원은 위임할 수 없다.	신설 제43조 (대의원의 출결) ① 대의원이 연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1. 작성자의 소속, 직위, 이름, 학번 2. 결석 사유 3.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② 결석계는 연학대회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. ③ 대의원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,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.
제51조 (대의원의 의무)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,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.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,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③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단,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으며, 중앙운영위원은 위임할 수 없다.	제52조 (대의원의 의무)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,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.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,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③ 대의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,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. 신설 제53조 (대의원의 출결) ①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,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단,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으며, 확대운영위원은 위임할 수 없다. ② 대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을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1. 작성자의 소속, 직위, 이름, 학번 2. 결석 사유 3.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③ 위임장과 결석계는 전학대회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. ③ 대의원이 위임장이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,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9조 (구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석중앙운영위원이 된다. 1. 총학생회장단 2. 본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3. 본회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4. 본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②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,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 ③ 연석중운의 요구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 ④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	제61조 (구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석중앙운영위원(이하 “연석중운위원”)이 된다. 1. 총학생회장단 2. 본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3. 본회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4. 본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②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,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 ③ 연석중운의 요구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 ④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 신설 제62조 (위원의 의무) ① 연석중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,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. ② 연석중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,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③ 연석중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,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. 신설 제63조 (위원의 출결) ① 연석중운위원이 연석중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1. 작성자의 소속, 직위, 이름, 학번 2. 결석 사유 3.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② 결석계는 연석중운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. ③ 의결권을 가진 연석중운 단위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,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.
제66조 (구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.	제70조 (구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(이하 “중운위원”)이 된다.

1. 캠퍼스회 총학생회장·부총학생회장 2. 캠퍼스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3. 캠퍼스회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4.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②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,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 ④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	1. 캠퍼스회 총학생회장·부총학생회장 2. 캠퍼스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3. 캠퍼스회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4.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②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,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 ④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. 신설 제71조 (위원의 의무) ① 중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,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. ② 중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,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 ③ 중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,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. 신설 제72조 (위원의 출결) ① 중운위원이 중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1. 작성자의 소속, 직위, 이름, 학번 2. 결석 사유 3.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② 결석계는 중운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. ③ 의결권을 가진 중운 단위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,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.
	신설 제80조 (위원의 의무) ① 학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,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. ② 학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,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
	③ 학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,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. 신설 제81조 (위원의 출결) ① 학운위원이 확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1. 작성자의 소속, 직위, 이름, 학번 2. 결석 사유 3.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② 결석계는 확대회의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. ③ 학운위원이 위임장이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,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.
제80조 (의무) ① 총학생회장단은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,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자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.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, 업무 실행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해 연석총회, 총회, 연학대회, 전학대회, 연석중운,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80조 (의무) ① 총학생회장단은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,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자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.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, 업무 실행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해 연석총회, 총회, 연학대회, 전학대회, 연석중운,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칙을 준수하며, 임기 초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에서 대의원이 숙지해야 할 총학생회칙 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.
제101조 (학생회장단) ①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. ②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연학대회 대의원, 전학대회 대의원, 연석중앙운영위원, 중앙운영위원, 확대운영위원이 된다. ③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의 선출, 업무와 권한,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. 제102조 (독립성의 보장)	제109조 (학생회장단) ①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. ②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연학대회 대의원, 전학대회 대의원, 연석중앙운영위원, 중앙운영위원, 확대운영위원이 된다. ③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의 선출, 업무와 권한,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. ④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, 보궐선거

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	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. 신설 제110조 (재정) ①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19조제3항에 의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. ②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항에 의해 배분받은 학생회비를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에 배분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. ③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19조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. ④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의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정하되,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「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111조 (독립성의 보장) ①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 ②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07조 (학생회장단) ①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장단은 각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. ②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장단은 연학대회 대의원, 전학대회 대의원, 학대운영위원이 된다. ③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장단의 선출, 업무와 권한,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. 제108조 (독립성의 보장)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는 총학생회칙과 소속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	제116조 (학생회장단) ①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장단은 각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. ②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장단은 연학대회 대의원, 전학대회 대의원, 학대운영위원이 된다. ③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장단의 선출, 업무와 권한,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. ④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,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. 신설 제117조 (재정) ①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는 제119조제3항에 의해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가 배분받은 본회의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.

	②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는 제119조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. ③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의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칙으로 정하되,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「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118조 (독립성의 보장) ①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는 총학생회칙과 소속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 ② 학부·학과·전공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, 단위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13조 (재정)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만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 받는다. ② 그 밖의 특별기구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첨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고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. 단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비 배분안에 의거하여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다. 제114조 (특별기구장단의 선출) ① 특별기구장단은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기구장단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기구장단을 제외하고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. ②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장단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.	제123조 (재정)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만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. ② 그 밖의 특별기구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첨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고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. 단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비 배분안에 의거하여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다. ③ 특별기구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기구 회칙으로 정하되,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「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. 제124조 (특별기구장단의 선출) ① 특별기구장단은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기구장단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기구장단을 제외하고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. ②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장단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. ③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및 부속기구 회장 혹은 부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,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. 신설 제127조 (독립성의 보장) ①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

	특별기구 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 ②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회칙을 개정한 경우,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19조 (학생회비) 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. ② 학생회비의 예·결산, 심의 및 조정, 집행 등의 모든 사항은 각 캠퍼스회 내에서 소속 캠퍼스회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로만 이루어진다. ③ 학생회비는 캠퍼스회,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,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배분되며, 학생회비 배분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. ④ 학생회비의 인상·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. 제120조 (회계연도)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. ② 본회의 재원은 매년 1학기 및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. 제122조 (결산) ① 매 학기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산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. ② 최종 결산은 전학대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 ③ 결산서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, 구체적인 결산의 방식은 「재정운용세칙」을 따른다.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2학기 정기 전학대회 이후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을 하여 대자보 형식으로 임기 말에 공고하여야 한다.	제130조 (학생회비) 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. ② 학생회비의 예·결산, 심의 및 조정, 집행 등의 모든 사항은 각 캠퍼스회 내에서 소속 캠퍼스회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로만 이루어진다. ③ 학생회비는 캠퍼스회, 단과대학·독립단위 학생회,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배분되며, 학생회비 배분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. ④ 학생회비의 인상·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. ⑤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소속 회원으로부터 납부받을 수 있으며, 이를 “자치회비”라 한다. 제131조 (회계연도)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. 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한다. 단, 진행 중인 사업의 재정이 복수의 기간에 걸쳐 집행될 경우, 회계담당자의 판단하에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. 1. 초반기: 임기 시작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. 중반기: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3. 종반기: 2학기 개강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제133조 (결산) ① 매 학기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산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. ② 최종 결산은 전학대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 ③ 결산서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, 구체적인 결산의 방식은 「재정운용세칙」을 따른다.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종반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을 하여 대자보 형식으로 임기 말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참 여	찬 성	반 대	기 권	결 과
54	54	0	0	가결

2. 2024학년도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독립단위 지위 해제
- 제98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독립단위 지위를 가진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가 2024학년도 성균융합원에 신설되는 에너지과학과로 인하여 독립단위 지위 해제 필요
 - 제98조의2 제2항에 따라 독립단위 지위 해제의 인준 진행

참 여	찬 성	반 대	기 권	결 과
54	54	0	0	가결

□ 건의 및 기타 질의 사항 논의

1. 내용 없음.

□ 감사 인사

-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에게 감사 인사 전달

□ 폐회 선언

- 성균관대학교 2023학년도 2학기 임시 자연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9시 42분 기준 폐회